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26,920,063	15,807,602
일반회계	467,813,226	14,034,397
특별회계	59,106,837	1,773,205
공기업특별회계	25,258,485	757,75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511,663	525,3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746,822	232,405
기타특별회계	33,848,352	1,015,4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30,032	60,90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375,676	11,2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67,503	86,025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1,001,937	30,05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437,160	43,11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79,518	83,386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2,161,200	364,836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079,742	182,39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64,533	10,936
도시개발특별회계	1,405,961	42,17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72,566	8,177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3,072,524	92,176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한도액은 1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642,08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은 예산 승인 된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